

건설근로자공제회 세무처리 매뉴얼

근로자의 **꿈**, 키우는 **보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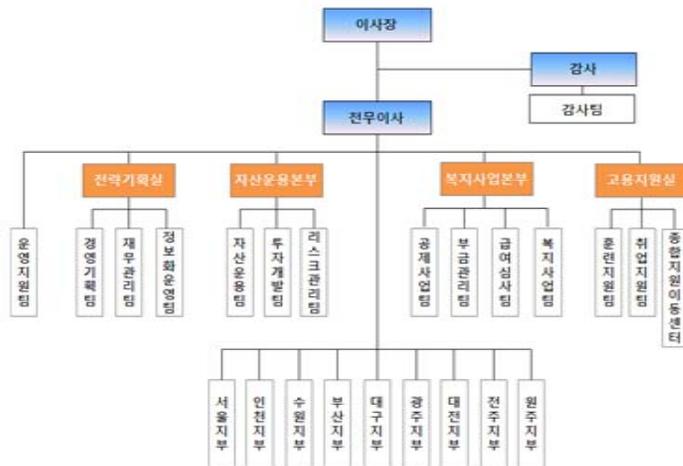
목차

공제회 사업에 대한 이해.....	3
- 조직도 및 업무 / 주요사업 /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 취지 /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 관리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22
- 원칙 / 공제회 현황 / 세무상 처리방법 / 기타 이슈	
자본금 관련.....	30
일반세무조정 관련.....	32
- 미수수익 / 퇴직급여 / 대손충당금 / 접대비 / 미확정비용 / 기부금 / 감가상각비	
인건비 세무검토.....	42
- 인건비의 정의 및 요건 / 임원 인건비 /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가산세	

공제회 사업에 대한 이해

1. 조직도 및 업무

공제회는 2012년 11월 기준 2실 2본부 15팀 9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견직 49명을 제외한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2인 및 비상임이사 17인 총 1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체제로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알선, 복지증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사업

공제회의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사업, 자산운용사업, 교육훈련 및 취업준비사업, 복지사업,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1) 퇴직공제사업

여러 건설현장을 수시이동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각 현장 근로 내역을 합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200호(실)이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공사 및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인 민간건설공사를 당연가입 대상공사로 하여 해당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인원수와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4,200원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제부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1년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 이상에 달한 때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납입된 공제부금을 부금회계상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며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해야 할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자본금의 부가 적립금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의 수령요건을 충족시에 해당 두 계정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자산운용사업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적립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펀드 매입, 투자자문회사에의 위탁, 리츠, 부동산펀드,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투자회사(PFV)에의 출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사모투자 등을 통하여 증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3) 교육훈련·취업지원사업

공제회는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정부위탁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10년부터 부금회계전입금 및 재산조성적립금을 재원으로 자체적인 근로자 및 취업희망자 대상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 맞춤형건설기능훈련, 건설기능인력직업훈련, 현장기

능책임자과정 직무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반값소개비 취업 지원사업, 특성화고 졸업자 등 젊은 건설기능인력 취업지원 사업,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훈련사업은 위원회의 선별을 통한 외부교육기관에 의해 100% 위탁으로 진행되며 교육진행에 있어서 건설근로자 및 취업희망자에게 별도로 수입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4) 복지사업

소득·문화수준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 대부 및 학자금·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공제금 담보로 공제원금의 50% 이내에서의 무이자 대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체보험가입 및 여가업체, 금융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피공제자의 우대사용 기회 부여 등의 일용건설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목적사업으로써 등기되어 있으며 피공제자가 퇴직

공제금 수령시 대부기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수령하므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없습니다.

(5) 이미지 개선사업

건설근로자에게 전문 직업인으로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 건설근로자 한가족 탐방행사, 건설고용포럼 운영,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3.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3조 제③항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①항 제 5호 나목에 따라 기금조성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113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문의 구분경리 기준이 명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제회는 관리목적상 자산운용과 부금관리계정을 총괄하는 부금회계와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제외한 사업을 기록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로 집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상의 구분경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사업에 귀속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의 명확한 구분기준을 매뉴얼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계정별 구분논리를 구축하여 향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분경리에 따른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의 절차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취지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세수확보에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사회적·문화적 및 교육적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국심97구2094, 1998.05.22 판결문 인용)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기금조성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1조의 준비금 손금 계상 특례에 따라서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정과목 수준에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

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제회는 부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일부 및 수익사업 관련 비용이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수익사업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①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①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①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법령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다음의 것들은 수익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 분	근 거
금융상품이자수익	상기 2호

구 분	근 거
채권이자수익	상기 2호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상기 3호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상기 3호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상기 3호
파생상품자산처분이익	상기 2호, 3호
대부금에 따른 이자수익	상기 2호

그러므로 공제회 사업은 크게 수익사업부문, 비수익사업부문, 공통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1)

구분	수익사업부문	비수익사업부문	공통부문
자산운용본부	○		
전략기획실			○
운영지원팀			○
그 밖의 기구		○	

현재와 같이 결산이 완료된 부금회계와 일반회계 중 수익사업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로 취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로 법인세를 조정 및 신고하는 방식도 타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행 방법은 결산된 재무제표를 한 번 더 분류해서 재산출해야 한다는 비효율성과 자본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향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구분경리의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가능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①항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의 규정으로 인해서 수익·비수익 사업용 자산, 부채의 명백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는 한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 법인세 세무조정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하였으며 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단순 합산 및 내부거래 제거

결산이 완료된 부금회계와 일반회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계정별로 단순 합산합니다. 별도 재무제표상 두 회계단위 간에 존재하였던 내부거래 자산·부채와 손익은 제거합니다.

특히 부금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비용)과 일반회계의 부금회계전입금(수익)은 각 회계간의 내부거래이므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금회계] 미지급부가금(부채)	100	→ 제거
[일반회계] 미수부가금(자산)	100	→ 제거

(2) 합산된 재무제표에 대한 세무조정 실시

상기와 같이 합산 및 내부거래가 제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기간귀속, 미확정수익/비용, 자산·부채 평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접대비, 기부금 등의 일반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각각의 세무조정 사항 중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개별적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은 『T/A개별 익금/손금』란에 기재하고, 분류가 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모호한 항목은 『T/A공통 익금/손금』란에 기재합니다.

(3) 수익 · 비수익 · 공통 익금 및 손금 집계

(표1-1)의 수익 · 비수익 사업부문 분류기준을 근거로 재무관리팀 담당자는 각각의 수익, 비용 계정상의 금액을 구분하고 상기 2)에서 세무조정한 내역을 반영하여 『개별 익금/손금 수익사업』, 『개별 익금/손금 비수익사업』 및 『공통 익금/손금』에 집계합니다.

이렇게 집계된 숫자는 공제회의 취합된 회계상 수익·비용을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변환시킵니다.

(4) 개별손금비율의 산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집계된 개별 손금 중 판매관리비 손금액 해당분에 대한 수익, 비수익 사업별 개별손금비율을 산출합니다.

영업비용, 판관비, 영업외비용 모두를 모집단으로 하여 개별 손금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이겠으나 수익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손실부분은 매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당 손익까지 고려하여 개별손금비율을 산출한다면 비율수치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액적 비중이 절대적인 인건비 등의 판관비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개별손금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시)

수익사업 판매관리비 손금 : 10 → 개별손금비율 10%

비수익사업 판매관리비 손금 : 90 → 개별손금비율 90%

(5) 공통 익금/손금의 배분

3)에서 집계한 『공통 익금/손금』 금액에 4)에서 산출한 개별손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3)에서 1차적으로 집계한 『개별 익금/손금 수익사업』, 『개별 익금/손금 비수익사업』에 배분, 합산합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금액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세무상

익금·손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6) 별지 15호 서식의 작성

2)에서 실행한 세무조정내역을 신고서식 별지 15호에 이기하고, 비수익사업에 최종적으로 집계된 『개별 익금/손금 비수익사업』은 비수익사업 비용(기타), 비수익사업 수익(기타)로 세무조정내역을 표시합니다. 최종적인 세무조정 사항이 15호에 반영되면 공제회의 모든 회계상 수익과 비용은 세무상 익금과 손금으로 변환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공제회 현황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명세서상 원천징수 된 소득(*1)을 100%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준비금 손금산입 비율은 100% 또는 50%입니다. 관련한 세부내역은 (2) 설정대상소득에서 논의하겠습니다.)

(*1)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법인세법 제73조)

구 분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기타이자소득금액	14%
투자신탁의 이익		14%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참고: 관련 서식작성)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2011. 2. 28. 개정)

(양쪽)

사 업 연 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 원천징수의무자		③ 원천징수일	④ 이자금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 ①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에금의 이자 등 발생사유 기재하여야합니다.
- ② 적용사유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2) 설정대상 소득

1) 요약

설정비율	세부내역
100%	ㄱ.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금액 (단 비영업대금이익제외(50%적용대상)) 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금액 ㄷ.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5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2) 100% 설정대상소득

2)-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금액

구분	내용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

구분	내용
	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의 이자와 할인액
③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이익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⑤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2003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체결분은 7년)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
⑥ 직장공제회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

구 분	내 용
초과반환금	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⑧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한 기타 금전 사용의 이익	위 ① 내지 ⑦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신종금융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기 ① 내지 ⑧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등

2)-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금액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③ 의제배당
-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⑧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 50% 설정대상소득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산업 소득금액(법령 제56조 제3항)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용자금이자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11.7.1 이전지출분)

(3) 검토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중 100%설정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준비금을 50%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중 100% 설정대상 소득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동 소득에 대한 분석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1) 이자소득

1)-1. 개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이자소득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통칙 73-0...1 ①). 또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설정대상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의 세법상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합니다.

1)-2. 공제회 이자소득 항목분석(FY2011기준)

항목	원천 징수	준비금 설정비율	비고
금융상품이자소득	○	100%	소법 §16 제1항
채권이자소득	○	100%	소법 §16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자소득(*1)	X	-	(*1)
기타보증금이자소득(*2)	X	50%	(*2)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자소득

비영리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983, 2010.10.26)

(*2) 기타보증금이자소득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상 사업이란 사업활동이 각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내용>

항목	내역
투자대상	더 블루힐 리조트
주요계약사항	계약자: 티솔루션 투자액: 504,900,000 기간: 2010.09.17~2013.09.17 수익률: 6.6%(매년 수익률의 3.3% 선지급) 기타사항: 매년 객실 240일 이용
소요재원	일반회계 만기자금 35억원:2010.11.24 CD

회사담당자 확인결과 동 투자의 목적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투자수익

이며, 보증금 투자형식의 투자는 위의 한가지에 한합니다.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융업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행위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공제회는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여행위를 하지도 아니하므로 동 보증금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준비금설정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이 타당합니다.

2) 배당소득

2)-1. 개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또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당수익 재원이 모두 투자신탁의 이익으로부터 인한 이익이라면 현행 회사가 하는 방식대로 100% 준비금 설정을 위한 배당소득 판단시 원천징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함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법인세법 제 73조, 법인세법 집행기준 73-0-1) 단, 공제회의 배당소득에 투자신탁으로 부터의 이익이 아닌 기타 배당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명세서상의 배당소득 이외에 동 소득 또한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 투자신탁이란 일종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의 형태 중 하나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의 형태를 이야기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

2)-2. 공제회 배당소득 항목분석(FY2011기준)

동 항목에 대한 분석은 진단목적 상 2011년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배당수익과 관련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자산구성내역이 변동하여 배당수익의 구성내역이 변동할 경우 동 현재 해당 자산으로 부

터의 소득이 100% 원천징수 대상이었던더라도 추후 사업연도시는 관련 자산으로 부터의 소득금액이 100%원천징수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2-1.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PL상)

일자	종목(배당소득수령)	준비금 설정율	원천 징수	비고
01.17	대신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100%	○	(*1)
01.26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00%	(*3)	(*1)
01.26	KB웰리안인디아투자신탁1-3	100%	○	(*1)
02.08	마이애셋부동산투자신탁12호	100%	○	(*1)
03.31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00%	○	(*1)
04.15	대신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100%	○	(*1)
06.03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	100%	○	(*1)
06.07	태광하이클V10	100%	X	(*4)
06.30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00%	(*3)	(*1)
07.15	대신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100%	○	(*1)
08.02	마이애셋부동산투자신탁12호	100%	○	(*1)

일자	종목(배당소득수령)	준비금 설정율	원천 징수	비고
08.16	KTB세이프사모증권투자신탁15	100%	○	(*1)(*2)
08.17	마이더스부동산1-1호	100%	○	(*1)
09.30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00%	(*3)	(*1)
10.17	대신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100%	○	(*1)
10.28	현대와이즈리치플랜사모신탁2호	100%	○	(*1)
11.11	KTB세이프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100%	○	(*1)(*2)
11.17	마이더스부동산1-1호	100%	○	(*1)
12.05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6호	100%	○	(*1)
12.30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00%	○	(*1)
12.30	랩 단기채권형	100%	○	(*1)(*2)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2) 투자신탁의 이익을 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공제회는 선급법인세 XXX/ 배당 수익 XXX 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하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는 원본에 전입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적립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제회의 회계처리 상 운용사가 대리납부한 선급법인세액만큼만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FY2011기준)

일자	PL 배당소득	원천징수명세서상 배당소득	차이
01.26	1,209,311,091	1,071,944,860	137,366,231
06.30	262,625,276	236,585,541	26,039,735
09.30	214,516,088	-	214,516,088

상기 분배금에 대하여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기 분배금에 대하여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동 투자신탁의 분배금이 유가증권의 처분손익등 비과표대상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유권해석(서이46012-10573, 2003.03.20) 및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할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증권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회는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이 유가증권의 매매손익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태광하이클V10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투자신탁으로 부터의 이익에 한합니다. 태광하이클 V10은 뮤추얼펀드로써 동 펀드로 부터의 배당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식대로

원천징수명세를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준비금이 해당금액만큼 과소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2-2. 지분법주식배당금(익금산입 유보)

2011년 기말 기준 공제회보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은 아래 세가지로 동 펀드보유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고유목적 준비금 100%설정대상입니다.

(단위: 원)

회사명	지분율(%)	2011년 기말 평가액
GE perrier 제1호	25.00	13,337,301
트러스와이 제7호	51.62	25,388,436
트러스케이 제8호	100.00	22,986,860

지분법주식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시 [현금 1,000 / 지분법주식 1,000]으로 회계처리 되며 이에 대해 기말세무조정을 통해 지분법주식 1,000 을 익금산입 유보처리 해야 합니다.

3) 50% 설정대상소득

100%설정대상 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관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문화적 및 교육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해당 손금산입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패널티

법인세법 제29조 제④항에서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산한 경우(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경우 동조 제⑤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일당 0.03%의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인정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⑥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자본적지출을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건설근로자의 공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준비금의 적립)에서는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언급하는 금액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관리

공제회에서는 상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의 기준대로 한도액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기금적립금 사용액이 포함되어 당년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가정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⑥항의 규정을 토대로 재계산을 해 본 결과 미사용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제공되어진 자료로 이전 기간의 사용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의 산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이므로 모든 사업비와 자산취득액을 사용액으로 보아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준비금전입액	사용액 ¹	잔액	사용기한
2008 년	37,370	5,759	-	2013 년
2009 년	71,721	11,577	-	2014 년
2010 년	66,790	132,058	-	2015 년
2011 년	48,860	37,899	37,448	2016 년

법인세법 제29조 제②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¹ 각 사업연도의 [부가적립금 적립액 + 일반회계 사업비 + 유형자산 취득액] 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합니다.

2007년까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이 손금산입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잔액이 없으며 현재 2011년 손금산입액에 대해서 37,448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관리하여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1.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검토한 결과, 법인세법 상 평가가 인정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또는 관련된 통화선도등의 파생상품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회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계상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과 관련된 평가이익(손실)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2. 현황

(1) 계정의 분류 방법

공제회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중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연동 파생상품에 투자한 자산은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계정별 평가방법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을 할인매입 또는 할증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매 사업연도 결산시 만기보유증권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피투자회사의 지분변동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또는 지분법자본변동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자산은 기말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금액을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투자신탁)의 시점별 회계처리

공제회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 중 투자신탁은 일반적인 지분증권과 회계처리가 일부 상이하며,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취득 시점

공제회는 취득 시점에 투자신탁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선취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기말 평가 시점

공제회는 기말에 투자신탁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매매기준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말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투자신탁은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재투자 시점

이익이 발생한 투자신탁은 연 1회 결산 시, 재투자하여 투자원금에 전

입하거나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회는 상기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배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며, 투자원금에 전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처분 시점

공제회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가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세무상 처리 방법

공제회가 보유한 유가증권 중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파생상품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익 및 손상차

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유가증권의 처분 시 유보를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정된 후의 유보 잔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기말 장부가액의 차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정과목의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손실)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합니다.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취득 시 (시가 100)	단기매매증권 100 현금 100	없음
기말평가 (시가 150)	단기매매증권 5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I/S) 50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50 △유보
기말평가 (시가 80)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I/S) 20 단기매매증권 20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20 유보
기말평가 (시가 30)	단기매매증권손상차손 70 단기매매증권 70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70 유보

단기매매증권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비율만큼 전기 유보를 추

인하며, 전량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유보를 전액 추인합니다.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기초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200	유보잔액: 단기매매증권 △100
60% 처분시 (시가 150)	현금 9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I/S) 30 단기매매증권 120	<익금산입> 전기 단기매매증권 60 유보
100% 처분 (시가 150)	현금 15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I/S) 50 단기매매증권 200	<익금산입> 전기 단기매매증권 100 유보

(2) 매도가능증권

1) 일반적인 세무조정

공정가치 평가로 인하여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증가(감소)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 100 현금 100	없음
매도가능증권 5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B/S) 50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기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B/S) 50 매도가능증권 50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기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합니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I/S) 100 매도가능증권 100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매도가능증권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비율만큼 전기 유보를 추인하며, 전량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유보를 전액 추인합니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	유보잔액: 매도가능증권 △100

회계처리	세무조정
현금 1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매도가능증권 1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50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 기타
현금 2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 매도가능증권 1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 기타

상기 세무조정 후의 유보 잔액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기말 장부가액의 차이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투자신탁의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 중 투자신탁 등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취득원가= 최초 투자원금+추가매수금액-중도환매금액+재투자금액

최초 투자원금과 추가매수금액은 실제 투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취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선취수수료 등은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환매금액은 환매직전의 취득원가에 감소되는 좌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투자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을 원금에 전입하는 경우, 그 전입액을 의미합니다. 재투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원금에 전입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투자금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기말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손익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제회의 회계처리	세무조정
투자신탁 취득	매도가능증권 100 현금 100	없음
재투자	회계처리 없음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50 기타
기말평가 (시가 180)	매도가능증권 8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B/S) 80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30 기타 평가이익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30 △유보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이익(손실)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합니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 현금 100	없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 지분법이익(I/S) 50	<익금불산입> 지분법이익 50 △유보
지분법손실(I/S) 5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	<손금불산입> 지분법손실 50 유보
지분법주식손상차손(I/S) 5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0	<손금불산입> 지분법주식손상차손 50 유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합니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현금 2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	<익금산입> 배당금 20 유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비율만큼 전기 유보를 추인하며, 전량 처분한 경우에는 관련 유보를 전액 추인합니다.

(4) 만기보유증권

공제회가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방법(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공제회가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1423, 2005.09.06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

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5) 파생상품

기말 시점에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손실)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처분 시에 관련 유보를 추인합니다.

4. 유가증권 관련 기타 이슈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공제사업팀에서 미납된 공제부금의 사후 회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풍림산업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미납된 공제부금 채권 중 74%가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 전환되었으며, 출자전환된 신주권 10주가 동일한 액면 보통주식 1주로 재

병합되었습니다. 미납된 공제부금 채권 중 26%는 현금으로 상환받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 2호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상 풍림산업 신주의 취득가액은 미납된 공제부금 채권 총액 중 출자전환된 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부도 또는 파산하는 사업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풍림산업의 경우와 같이 미납된 공제부금 채권이 현물출자되는 거래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부금 미납 채권을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또는 세무처리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관련

1. 논의점

자본금 각 항목의 내역검토

자본금 변동내역 검토

2. 관련 세부내역 확인

(1) 연도별 자본금 현황

(단위: 천원)

과목	2009.12.31	2010.12.31	2011.12.31
자본금			
공제부금	1,053,703,738	1,293,146,077	1,529,592,435
부가적립금(*1)	57,027,611	170,952,879	185,824,396
고용기금적립금(*2)	4,388,010	4,263,536	4,150,724

(*1) 부가적립금

: 공제회는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공제금 이자상당액을 부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이자상당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가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2) 고용보험기금

: 공제회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으로서, 과거 교부된 수입증지책자가 반환되어 확정된 시점에 고용보험기금(자본금계정)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된 고용보험기금은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2) 연도별 자본금변동현황

(단위: 원)

구분	자본금
2009.12.31	1,115,119,358,983
2010세입	270,682,259,668
2010세출	(37,841,610,140)
2010부가적립금적립	120,402,484,219
2010.12.31	1,468,362,492,730
2011세입	276,801,229,560
2011세출	(48,714,485,790)
2011부가적립금적립	23,118,318,310
2011.12.31	1,719,567,554,81

(3) 부가적립금 산정근거확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세무조정 관련

1. 미수수익

(1) 공제회 현황

2011년 기말 기준 공제회보유 미수수익은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한 이자수익의 기간경과분 수익인식액에 해당합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경과분 이자를 인정하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지향하므로 동 이자수익이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한 법령과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 및 기타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손익귀속시기)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3) 세무조정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이자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할 수 있으나 단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동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계상 미수수익 중 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수익은 당기말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공제회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제 62조 제1항)

단,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이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때마다 원천징수 된 법인세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일종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둔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보유한 투자상품의 이자소득 중 운용사가 해당기간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분배 및 통지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추후 분배금 수령시 지난기간에 선납한 원천세에 대해서 선납원천세로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는 각 사업연도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나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운용사가 원천징수 하여 대납한 소득에 대하여 운용사에 회사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는 동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 및 세무처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분	세부내역	
결산계상	(차)미수수익 1,000	(대)이자소득 1,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000 (유보)

2. 퇴직급여

(1) 공제회현황

공제회는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퇴직금 지급대상은 정규직에 한정합니다. 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무기간 산정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까지 통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법인세법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정해진 한도내 손금인정하고, 사외적립한 퇴직연금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 손금산입을 통해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령과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1)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2. 4. 13. 개정)

(*1) 각호의 비율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도율	30%	25%	20%	15%	10%	5%	0%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3) 세무조정

공제회가 각 사업연도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총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총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아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또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납부한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 2).

공제회는 퇴직급여총당금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한도를 산출하여 당기 설정액에 대한 퇴직급여총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퇴직보험예치금 한도내 설정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당기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손금산

입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계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총급여액기준, ②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① 총급여액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X 5%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기준

= 퇴직급여추계액(*1) X 한도율(*2)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 퇴직급여추계액 = Max [a, b]

a.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2) 한도율

사업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도율	30%	25%	20%	15%	10%	5%	0%

<퇴직연금등 손금산입 한도계산>

퇴직연금등(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은 제외)의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추계액기준, ②예치금기준)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1)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기손금산입 부담금

② 예치금기준

= 기말퇴직연금예치금 등의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3. 대손충당금

(1) 공제회현황

<FY2011년 기말 감사보고서 금액기준>

적요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특정금전신탁_아일랜드캐슬	3,604,328,176	(3,604,328,176)
특정금전신탁_버드우드	1,161,369,863	(1,161,369,863)
특정금전신탁_양재동	295,635,718	(295,635,718)
합계	5,061,333,757	(5,061,333,757)

공제회의 2011년 기말 기준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모두 미수수익에 대한것으로 관련 미수수익이 모두 익금불산입 됨에 따라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련 대손충당금 또한 전액 부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일반적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관련 법령 및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1998. 12. 31. 개정)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손금인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회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상 계상한 손비중 아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조정하여야 합니다.

<한도계산>

$$\text{한도액} = \text{기말대상채권잔액}(*1) \times \text{Max}(1\%, \text{대손실적률}(*2))$$

(*1) 설정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채권 및 미수금 등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채권

(*2) 대손실적률 =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인정되는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4. 접대비

(1) 공제회현황

공제회는 접대성 비용으로 업무추진비 중 사업비와 친목상조비 등의 비용을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1. 12. 31. 단서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3) 세무조정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미충족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소득처분
1. 주주등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	상여/배당
2. 1회 지출한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사외유출
3.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한도계산>

$$\text{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 \text{기본금액}(*1) + \text{수입금액기준}(*2)$$

(*1) 기본금액 : 1,200 만원(중소기업 1,800 만원)

(*2)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	적용률	비고
100억이하	20/10,00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금액의 20%
100억초과 500억이하	2천만원+100억초과X10/10,000	
500억초과	6천만원+500억초과 X3/10,000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5. 미확정비용

(1) 공제회현황

공제회의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과 관련하여 계상된 비용과 관련한 미지급비용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동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령

6. 기부금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고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고려한 일정 범위를 한도로 손

금으로 인정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부인됩니다.

공제회의 경우 부담금계정 및 행사비계정에 일부 기부금 성격의 지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비품 및 기타유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4년의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6조 제

④항 및 동법 제28조 제①항 제2호) 현재 공제회는 회계상 감가상각 또한 내용연수 4년의 정률법 상각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수선유지비 등의 계정의 실질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법인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세무검토

1. 인건비의 정의 및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인건비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는 인건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관련법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제회가 사용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급여, 상여, 수당 등의 일반적인 급여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인건비로 볼 수 있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인건비는 공제회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어야합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대가성 없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볼 수 없으며, 공제회의 업무와 관계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과다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과다하게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제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 지급되는 이익이 근로제공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위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복리후생비가 있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와는 달리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제회가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공제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회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임원 인건비

세법에서는 사용인의 인건비와 임원의 인건비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인의 인건비는 규제 수준이 높지 않으나,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임원의 인건비는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인건비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예납적 또는 완납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 절차는 소득의 지급, 원천징수, 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 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제회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임직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동법 시행령 185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자소득
- ② 배당소득
-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④ 근로소득
- ⑤ 연금소득
- ⑥ 기타소득
- ⑦ 퇴직소득.
- ⑧ 특정 봉사료

진단일 현재, 상기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공제회에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이며, 소득 별 원천징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1)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5조]

원천징수의무자인 공제회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며,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

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자의 전근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어 월급여액이 근무지 별로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법 제136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해당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성과급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성과급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성과급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의 기간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8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8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제135조]

공제회가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세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

니다.

(2)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6조, 제148조]

1) 일반적인 경우

공제회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한 임직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임직원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47조]

만약, 공제회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임직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회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45조]

공제회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지급하는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세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소득세법 제140조]

공제회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① 임직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 ② 계산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

상기 절차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가 해당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한 세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지급 시 임직원에게 환급하

여야 합니다.

공제회의 임직원이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세율

근로소득은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하는 때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20%의 세율로, 퇴직소득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지급명세서는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일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① 이자소득
- ② 배당소득
-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④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⑤ 연금소득
- ⑥ 기타소득(봉사료는 제외)
- ⑦ 특정 봉사료
- ⑧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진단일 현재, 상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중 공제회에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5항]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14조, 동법 시행규칙 제97조]

- ① 공제회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금
- ②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③ 실비변상정도의 금액(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금 포함)
- ④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① 공제회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제회가 부담하는 부담금

②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실비변상정도의 금액(20만원 이내의 차량보조금 포함)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5. 가산세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2011년 까지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세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국세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 2011년 12월 31일 이전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Max [①, ②]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5%

2) 2012년 1월 1일 이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Max [①+②, 미납세액의 10%]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2)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